아동상담 전용전화 1577-1391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29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지

| 2007 여름호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 전 화 : 02-558-1391 | 팩 스 : 02-558-1339
| URL : korea1391.org | 발행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행인 : 이호균 | 발행일 : 2007. 6. | 편집인 : 서태원, 이계화

한국 아동권리 수준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고, 1990년 9월 2일에는 국제법으로 공포하였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협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한국정부는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초 50여개의 권고사항을 한국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자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이러한 강제적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협약의 비준국가들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써 옴브즈맨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이 아동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 검증할 수 있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옴부즈맨 기구 설치를 각 국가에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아 쉽지 않았으며, 계속 미루어져 왔다.

한국정부는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권리 수준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즉, 2006년 10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위탁한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차원에서 26명의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모니터링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아동의 권리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퍼슨의 운영은 초기단계이며 시범실시단계에 있어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지 무려 15년 만에 성취한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 · 운영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과 시설의 관련 정보를 수집 · 정리하고, DB를 구축하여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에서 수립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아동권리 이행을 위하여 법, 정책,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한다. 넷째,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실제적인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와 그 권리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성인과 전체 아동에게 보급한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퍼슨의 활동은 향후 보다 발전된 아동권리 모니터링 접근방식과 아동권리의 획기적 증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 승 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센터장



Study Tour '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학대받은 아동,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2002년 영국, 2003년 호주, 2004년 미국, 2006년 캐나다에 이어 2007년에는 한국암웨이(주)의 협찬으로 대만, 싱가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만, 싱가폴 연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양문화권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호에서는 대만의 아동보호체계와 관련 기관을 살펴보고 다음호에서 싱가폴의 아동보호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Focus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 **최석현**

대만의 아동보호체계

대만은 Intake 당시 상담원이 긴급사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사례인 경우에 경찰서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 25개 현 · 시의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센터로 신고사례를 이관한다. 따라서 긴급사례는 경찰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긴급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폭력 · 성폭력 방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 CCF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피해아동에게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격리 후 72시간 내에 소년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과의 연계시스템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의 지원을 받아 격리조치를 원활히 수행한다.

이렇게 격리보호를 한 경우 3개월 동안 위탁가정 혹은 그룹홈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보고한다. 아동학대에 있어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사례가 아닌 중위험군에 속한 사례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1개월에 1회씩 가정방문을 통해 위험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대만의 아동보호 관련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녀와 젊은 부녀자를 돕기 위해 1988년 비영리, 비정부 단체로 설립된 이 기관은 현재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윤락업에 매매된 소녀, 이민 부부에 대해 쉼터 제공, 법적 보호, 취업 훈련, 일시적인 안식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Service Network 】

- 상담서비스 : 모래놀이, 전화 상담과 학대 방지 교육 등
-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 쉼터, 상담, 합법적인 원조, 교육, 훈련, 그리고 일자리 주선
  - 장기와 단기 쉼터 :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적인 시설로서 십대 소녀들에게 의식주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퇴학을 당했거나 성적인 산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성교육, 가족상담 등
  - 미혼모프로그램 : 경제적 자력이 없는 젊은 미혼모(리틀맘)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 여성과 가족 서비스
  - 가정 폭력피해 여성과 자녀를 위한 치료 및 편의시설, 쉼터를 제공
  - 이민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담, 쉼터, 의료 서비스, 법적 원조, 합법적인 지원 등을 제공

Hot Line 113(World Vision)

한국의 보건복지콜센터와 유사한 이 기관은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 통과 이후, 기존 아동 · 부녀보호전용회선(080-0422110)에 성폭력방지보호전용회선(080-0000600)의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창구를 개설하였음(24시간 접수). 초기 요보호 아동의 신고 및 상담기능에 성인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와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추가됨.

【 업무수행 】

- 접　수 : 사회복지사 32명, 외국인 신고자 위한 통역 16명(5개국- 영어, 월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 서비스 : 24시간 신고접수가능, 전국 각 지역, 일반 또는 시외전화 모두 가능, 주간에는 주화전신을 통해서 각 지역 기관으로 연결되고, 각 지자체에서 연결 불가 시 가능한 센터로 연결됨.

【 신고 후, 처리 】

- 전문 사회복지사가 교대 근무하면서 상담을 하여 원하는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신고자의 응급보호요청이나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림. 시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고자를 보호함
- 위급 상황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회복지사가 즉시 처리하도록 함

【 서비스 과정 】

- 신고접수 ⇒ 통역 필요 여부 질문하여 적절히 연결해줌 ⇒ 긴급 상황이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전화상담(모두 녹음, 즉시 기록 · 정리) ⇒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지자체 가정폭력 · 성침해 · 성폭력센터에 연계(113 신고내용은 모두 온라인상으로 저장하여 공유) ⇒ 필요한 서비스 제공처로 연계가 끝나면 접수를 끝냄
- 113센터는 내정부에서 위탁한 센터로, 대만 내 각 기관으로 연계됨

기타기관

① 가정폭력 · 성침해 · 성폭력예방위원회

- 중앙정부에서 관리
- 1997년, 98년 가정폭력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업무 필요성 실감
- 시, 현 마다 가정폭력 · 성침해 · 성폭력센터를 설립(현재 25개)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등에 개입
- 내정부와 민간(113)에서 상담하는 24시간 신고체계 운영

② Child and Juvenile Adoption Information Center

- 입양자와 입양부모, 친부모의 신상정보관리(유전병 등 건강 기록)와 함께 친가족 상봉 주선업무

③ TAIWAN FUND Children and Families

- 주요업무 : 아동학대예방 홍보, 학대 받은 아동 보호, 그룹홈 운영, 가정위탁사업

④ Miaoli District Court

- 2006. 7.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의 합병으로 현재 소년 · 가정법원 형태가 됨
- 대만의 전국 법원에는 17개의 가정폭력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법원 이용안내, 가정문제 중재,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중 Miaoli지역은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에서 위탁 운영(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1명)하고 있음



이분기 주요사업소개

교육홍보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겸 작곡가인 김현철과 함께 4월 중 2007 아동학대예방포스터를 제작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관공소 및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 5월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세요' 라는 주제로 아동에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근본적인 아동학대예방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2007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6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피학대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부제: 가정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라는 주제로 '2007 기획포럼' 을 개최하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학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 쉼터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캠프 '꿈꾸는 세상 – 희망' 을 6월 중 진행하였다.

상담연구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수교육' 을 4월에 개최하여 전국상담원들을 대상으로, upgrade된 전산시스템 내용과 사용방법을 교육하였다.

• '200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를 4월에 발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현황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아동학대 사례 개입 시 사법적 조치의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간계획중인 '사례개입 법적 매뉴얼' 의 Task Force Team 회의를 5월 중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 상담원이 전반적인 사례진행을 스스로 체크하고 위기사례관리 시 적절한 대처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5월 중 '사례관리 점검표' 를 제작하였다.

• 아동학대사례의 효과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자원간의 공고한 네트워크구축을 도모하고자 '대전, 충청권역 case conference'를 6월 중 진행하였다.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랩어라운드 (Wrap-around) 회의

이기준(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장)

랩어라운드 회의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또는 방임 등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이 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정보 공유 그리고 각각의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본 회의는 그동안의 아동보호 업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한 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한 아동이 여러 기관에서의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서비스 남용 문제, 꼭 필요한 자원이 확보 되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개개의 기관들이 단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개입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아동의 부모, 양육자를 포함한 모든 자원들이 함께 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관은 랩어라운드 회의가 아동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미시간대 명예교수인 Rosemary Sarri 교수와 호주의 Debbie Jean 교수를 모시고 국제자문을 받고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기대효과 】

• 짧은 시간 내에 아동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사례 개입의 효율성 증대
• 자원들 간의 협력 관계형성을 통해 책임성 강화
• 응급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
• 자원들 간의 부담 경감 및 연대감 증진

【 적용 사례】

▶산골에서 부와 살고 있는 6남매에 대한 방임과 성학대 사례 개입

담임교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읍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안동병원간호사, 본기관 상담원들이 랩어라운드 회의에 참가하였음. 회의 후 아동들의 집을 산골에서부터 학교 인근으로 옮겨 주고, 방과후 학습지도 등 특별지도를 제공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그리고 아동들의 일상생활지도를 각각 역할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됨.

▶알콜의존 아버지 가정에서 자라는 방임 아동에 대한 효율적 개입

담임교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아동의 삼촌과 백부, 복지관 사회복지사, 본 기관 직원2명이 랩어라운드회의에 참여함.
회의 결과 아동의 방과 후 시간 관리에 대하여 학교담임과 복지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백모에 의해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알콜의존 아버지와 그 친구들에 대한 개입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아동의 방임문제가 해결됨.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Food Art Therapy

민향기(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미술치료사)

Food Art Therapy는 요리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 및 발달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성을 발전시키고 특히 자존감이 약한 청소년이나 산만한 아동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흥미 있고 즐거운 활동으로서 개인 및 집단 미술치료의 매체로 매우 유용하다.

활용도구	• 5세 이하: 각종 놀이기구, 찰흙놀이 모양 틀, 과자 틀 • 6세 이상: 각종 조리도구, 소형 간이 오븐기, 전기 버너
과 정	• 재료확인 – 만들기 – 작품 설명과 사진 촬영 – 나누어 먹기
적용시간	• 대상 특성에 따라 10분에서 2시간
기대효과	• 라포 형성이 빠르다 • 상담 시 느끼는 불안감과 거부감을 극소화 한다 • 자존감향상과 주의집중효과가 크다. • 미술매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내담자의 만족감이 크다.

【 적용사례 】

개인



사회복지사 꿈을 갖고 있는 10세 피학대 남아가 자신의 장래희망을 생각하며 사회복지사가 된 후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기와 타자기를 표현함. (15분 소요)



팬더 별칭을 가지고 있는 10세 피학대 남아가 자신의 별칭을 떡과 과자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억제되었던 흥미와 즐거움을 표출하는 기회가 되었음. (15분 소요)

집단





10세~12세 피학대 아동 4명이 파티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생각하며 만든 공동작품. 아동들이 좋아하는 케익용 카스테라와 생크림, 젤리, 과자 등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케익을 만들면서 즐거움과 더불어 협동심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사후관리 '친구같은 선생님'

이성호(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본 프로그램은 피학대 아동과 가정에게 교육훈련을 받은 멘터를 활용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멘터는 관련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로 피해아동과 학대가정에 정신적 지지자, 조언자, 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대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안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1:1 일상생활 속에서 만남을 가짐으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아동양육기술부족 등의 문제로 재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부모에게 실시되는 부모교육은 원가정복귀의 기본이 되어 재학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멘터들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아동과 가정에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멘터들은 아동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학습지도 및 여가시간을 함께 한다. 부모멘터의 경우 부모상담 및 지지적인 역할, 부모 모델링을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다. 멘터들은 주 1회 활동내용을 상담원에게 보고하고 개별 수퍼비젼을 통해 진행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기관에는 4명의 멘터가 활동 중이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나는 그룹홈'

김정아(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신나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근래 '신나는 그룹홈' 아동들의 활동소식을 전하면 아래와 같다.



▶소방안전훈련

그룹홈은 여러 아동이 함께 사는 곳인 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소방 · 교통 · 가스 등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4월중 마포소방서에서 소방안전훈련을 받았으며, 소방관이 꿈인 희철(가명)이에겐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한다.

▶봄나들이 – 외갓집체험



'신나는 그룹홈'에서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계절별로 나들이와 캠프를 다녀온다. 5월 26, 27일은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으로 양평 신론리로 외갓집체험을 다녀왔다. 외갓집체험에서 아이들은 처음 접해 본 모심기, 감자 캐기, 뗏목타기, 송어잡기를 하는 동안 내내 왁자지껄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신나는 여름캠프

한국암웨이(주) 지원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룹홈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신나는 여름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캠프에서는 시원한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소시오 드라마(sociodrama)'라는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좋은 친구 · 좋은 이웃'

김시진(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생활지도원)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인 '좋은 친구 · 좋은 이웃'은 우정사업본부 지원으로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 4월 중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영어마을을 견학하였다. 아동들은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편식하는 아동을 위한 영어뮤지컬 관람, 그리고 은행, 우체국, 병원, 경찰서, 여행사 등의 모의 공공시설에서 실생활 영어 대화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즐겁게 영어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영어마을을 경험한 '좋은 친구 · 좋은 이웃' 아동들은 이후 소감문과 그림편지를 쓰며 즐거웠던 시간과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포럼

'피학대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제한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아동격리보호를 위한 친권제한은 행정적인 보호조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차원의 상담, 치료 및 수강의무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함께 현행법 및 제도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외국법과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7 기획포럼 '피학대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부제: 가정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에서 주제 발표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개입 제도개선의 필요성 | 이호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Ⅰ. 아동보호 과정상 문제

- 아동 보호가 법원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격리보호 중 친권자가 아동의 귀가 조치를 요구할 경우 막지 못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보호 조치 후 시설장은 친권자 횡포와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귀가되고 있음.
- 약정 위탁기간 내에 아동 귀가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아동귀가를 요구할 경우 법정 후견인 자격이 없는 위탁부모는 친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친권상실 선고 청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며, 지자체장은 변호를 선임하거나 가사사건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해야 하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절차가 되지 못함.

Ⅱ. 아동학대 현황에 근거한 친권개입의 필요성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학대아동보호사례 81.1%
- 학대아동보호사례 중 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 34.4%
- 격리보호 중 장기보호 27.6%
- 학대행위자 중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 83.5%
- 학대아동보호건수 중 재신고된 아동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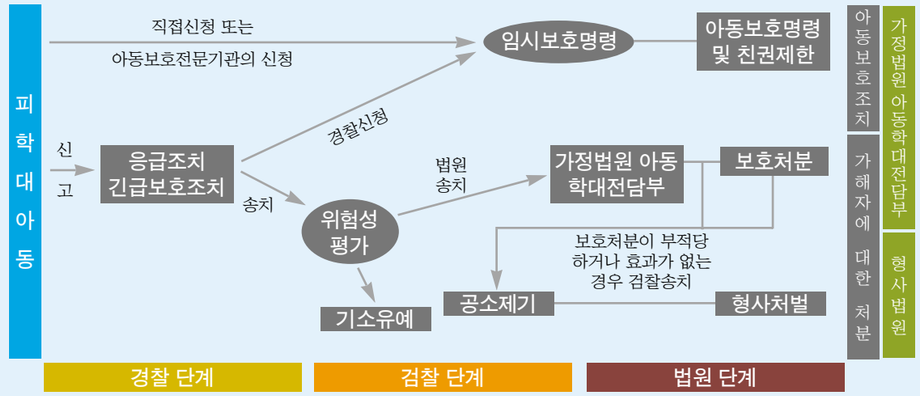
발 제 1. | 학대행위자의 친권제한과 전담법원제도 도입방안 | 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교수)

Ⅰ. 미국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절차 통합화 경향

- 아동학대사건은 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함. 소년법원의 절차는 학대행위 종식과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개입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의도하는 절차는 아님.
-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친권상실은 Adoption and Safety Family Act에 따름. 최대한 24개월 동안 학대행위를 저지른 부모의 친권자로서의 복귀가능성을 점검하고,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모의 친권박탈여부를 결정함.
-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나 학대행위자가 자발적 의사로 교육수강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함.

Ⅱ.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통합적 개입전략에 기초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 아동학대전담법원을 통한 개입모델



2. 아동학대전담법원의 역할

-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제도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입
-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결합방안으로서 회복적 공동체사법 프로그램 활용

발 제 2. |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 |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Ⅰ.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

1. 미국

- 사례관리 시 피학대 아동이 가정에 머물 경우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면, 가족 동의 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아동을 위탁 등 가정 외 보호로 옮기는 조치를 취함.
- 친권 박탈 후 입양 등 사법처리에 앞서 부모가 올바른 양육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처우)적 개입이라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캐나다

- 피학대 아동의 보호에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원에 아동학대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감독과 강제수강 혹은 치료 명령을 내릴 권한을 추가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3. 호주

- 아동보호를 위해 법원이 적절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 보호와 직결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지시, 아동과의 직접 혹은 간접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동행한 경우 이외에는 아동과 접촉 금지, 친권을 부모가 아닌 적합한 아동의 가족구성원 혹은 아동보호기관 장에게 부여, 아동에 대한 '단기 보호권'을 아동보호기관 장에게 부여, 아동에 대한 '장기 보호권'을 부모가 아닌 적합한 아동의 가족구성원 또는 아동보호기관 장이 지정하는 부모가 아닌 적합한 아동의 가족구성원 또는 아동보호기관 장에게 부여

발 제 3. | 피해아동 재활 및 보호체계 개선방안 | 홍영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범죄 또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개선방안

1. 범죄 또는 학대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기관과 전문 인력 확충
2.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보험가입 제약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3. 자녀의 범죄 또는 학대피해에 대한 부모교육
4. 범죄 또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5.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조사 및 증언에 대한 지원서비스
6. 범죄 또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 통계자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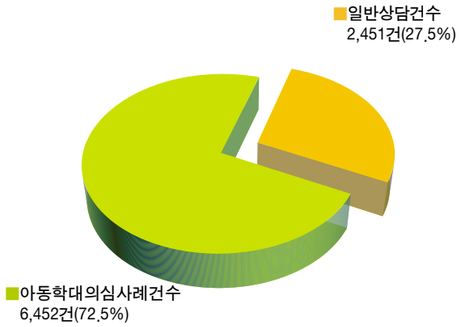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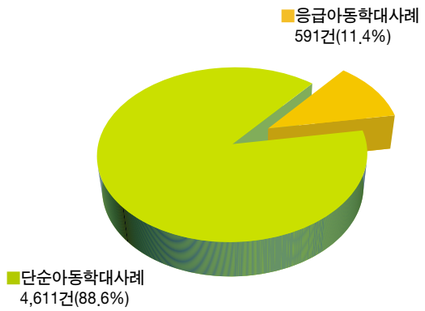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아동학대 사례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마다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 동안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신고접수 현황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총 건수는 8,903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6,452건(72.5%), 일반상담건수는 2,451건(27.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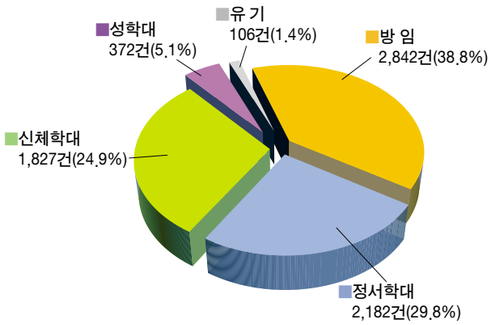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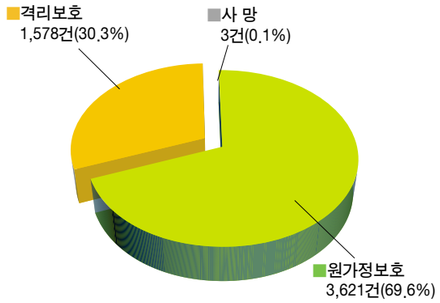
2. 학대아동보호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5,202건이었다. 즉각적인 의료조치나 격리가 요구되는 응급아동학대사례는 591건(11.4%)이었으며, 상해나 학대 지속성 정도가 미약한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611건(88.6%)으로 나타났다.

3.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복학대 제외)

아동학대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복학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모두 표기해서 살펴보았을 때, 방임이 2,842건(38.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정서학대 2,182건(29.8%), 신체학대 1,827건(24.9%), 성학대 372건(5.1%), 유기 106건(1.4%)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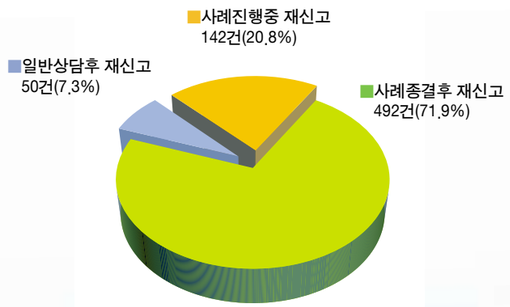


4.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시킨 경우가 3,621건(69.6%), 격리보호를 취한 경우가 1,578건(30.3%), 아동이 초기에 사망한 경우가 3건(0.1%)으로 파악되어, 원가정보호조치가 격리보호보다 약 2.3배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5. 재신고 발생시기

재신고가 발생한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례진행 중 발생한 재신고는 142건(20.8%),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재신고는 492건(71.9%), 일반상담 후 발생한 재신고는 50건(7.3%)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신고 사례 가운데 71.9%에 달하는 492건의 사례가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종결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에서 의료인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한 이래로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2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세미나, 캠페인, 교재개발 및 배포, 아동학대예방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각 병원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 대한의사협회 주최로『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을 거행하였고, 2007년 현재 총 62개의 학대아동보호팀이 전국병원 내에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의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구성된 삼성서울병원 아동학대보호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 및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보다 신속한 신고 및 보호를 위해 2007년 상반기 동안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과 같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주로 발견되는 총 9개 진료과 의료진 23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 아동학대보호팀 활동 및 신고절차, 의료진이 점검 ·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아동학대보호팀장 및 팀 위원이 연자로 참여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병원내 마련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전화(사회복지실 ☎ 0000)가 적극 홍보되어 향후 신속한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우)135-515
781-46 Yeoksam 2-dong, Gangnam-gu, Seoul, Korea 135-515
TEL : +82-2-558-1391
FAX : +82-2-558-1339
URL : korea1391.org
E-mail : ncpa@korea1391.org
ARS (피학대아동 후원) : 060-700-1391

* 이 소식지는 짐보리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